#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6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, 처리기한,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.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「행정기본법」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,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「행정기본법」에비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,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 기한을 각각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과 10일로 함으로써 국민 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(안 제68조의2 및 제 86조의2).

##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한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의약품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.
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.

제8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8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 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1항에 따른 부담금"을 "부담금"으로, "이의신 청"을 "이의신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"으로 한다.

- ⑤ 의약품의 제조업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 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 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이의신청일부터 제6항에 따른 결과통지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광고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2제2항부터
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하는 심의 결과부터

적용한다.

제3조(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8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의2(광고의 심의) ① (생	제68조의2(광고의 심의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
	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의약품
	을 광고하려는 의약품 제조업
	자·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
	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
	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
	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	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
	의신청을 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
	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
	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
	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
	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	<u>⑤</u> <u>제1</u>
<u>항</u> 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	<u>항부터 제4항까지</u>
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	
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	
③ 제1항에 따른 광고심의의	<u>⑥</u> 제1항부터 제4항까지

절차와 방법,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, 심의 내용의 변경과 심의 결과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 하다.

제86조의2(의약품 부작용 피해구 제 부담금) ① ~ ④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86조의2(의약품 부작용 피해구 제 부담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- ⑤ 의약품의 제조업자·품목허 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제1 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 부기한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 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-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

- ⑤ (생략)
-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- ①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방법, 납부기한, 납부절차, 이의신청,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항이	] 따른	- 0]	의신	청	내용	용이	타
<u>당히</u>	나다고	인경	성되던	년	ユ	내용	불을
반영	]한 남	감부금	글 액	및	납	·부기	] 한
을	기재한	납	부고	기소	를	ユ	납
<u>부</u> フ	]한 3	0일	전끼	기	(٥	의신	<u>] 청</u>
을	한 자연	게게	송부	나하	भे ०	ㅑ 한	다.
<u>0]</u>	경우	납부	-기호	<u> </u>	٥]	의신	<u>] 청</u>
<u>일</u> 부	나터 저	6항	에 [1	<b>구른</b>	결	과통	<u> </u>
일 <i>끼</i>	·지의	기긴	<u> </u>	卫i	격충	<del> </del> 여	정
한디	<u> </u>						
<u>®</u> (	(현행	제5호	항과	같음	슬)		
9	제8항						

<u>한다.</u>
⑧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 </u>
<u>⑩</u> 부담금
<u>o</u> ]
의신청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-